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의안 번호	9-128

제출년월일 : 2022. 3.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안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관사 운영방안 권고사항에 대해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등……(안 제23조)
○ 대부료 등의 조정……(안 제29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안 제35조)
○ 관사 운영비의 부담……(안 제49조)

☐ 개정조례안 : 붙임 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9조, 제33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제29조, 제34조, 제38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4)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3. 1. 25. ~ 2. 14.(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전문) : 붙임 5
○ 방침결정문 : 붙임 6

회계과 - 정승희 - 2023-03-03 13:47:20 - ***.*.***.68

〈 붙임 1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에 "영 제14조제6항"을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로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르며, 영 제14조제6항"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2항"을 "조례 제35조제1항의"로 한다.

제29조 "일부 또는 전액을"을 "전액을"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에 따른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원계과 - 정승희 - 2023-03-02 18:07:32 - ***.*.***.68

3.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시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시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시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49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의 방법으로 대부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제6항, 제35조제1항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과		회계과
입	실·과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김 영 식
안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산관리팀장 박 선 희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정 승 희 (행정 2175)

회계과 - 정승희 - 2023-03-02 18:07:32 - ***.*.***.68

〈 붙임 2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 ③ (생 략)	제23조(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하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산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로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르며, 영 제14조제6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위치 · 형태 ·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준용하며, 해당 내용 중 "매각"은 "대부"로 본다.	⑥ ---------- ---------- ---------- ---------- 조례 제35조제1항의 ----------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위계과 - 정승하 - 2023-03-02 18:07:32 - ***.*.***.68

제29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대부료 등의 조정) ------- ---------- ---------- ---------- ---------- ----------전액 ----------.
제35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5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 ---------- ---------- ---------- ---------- ----------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에 따른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회계과 - 정승희 - 2023-03-02 18:07:32 ***.*.***.68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3.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시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시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시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위계표 - 정승희 - 2023-03-02 18:07:32 - *** * *** 6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49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일러 운영비(1급 관사에 한한다)	<삭 제>
5. 전기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삭 제>
6. 전화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삭 제>
7. 수도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의 계내 - 정승희 - 2023-03-02 18:07:32 ***.*.***.68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9-128호

제안년월일 : 2023. 3. 28.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추가로 반영함.

□ 주요골자

○ 부시장 관사의 화재보험료, 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49조)

의회사무국 - 정현석 - 2023-04-12 15:10:38 - ***.*.***.35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9조제2호 중 "수선비, 화재보험료"를 "수선비"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의회사무국 - 정현석 - 2023-04-12 15:10:38 - ***.*.***.35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49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49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 ------- ----- ---------- ----.	제49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 ---------- - ---------- ----.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의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관사에 한한다)	2. (현행과 같음)	2. 건물유지 수선비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관사에 한한다)
3.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관사에 한한다)	3.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보일러 운영비(1급 관사에 한한다)	<삭 제>	4. (개정안과 같음)
5. 전기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삭 제>	5. (개정안과 같음)
6. 전화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삭 제>	6. (개정안과 같음)
7. 수도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삭 제>	7. (개정안과 같음)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관사에 한한다)	8. (현행과 같음)	<삭 제>

의회사무국 - 정현석 - 2023-04-12 15:10:38 - ***.*.***.35